

무배당 KB스타즉시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 목 차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 .....	2
2. 고객정보 취급방침 안내 .....	4
3. 가입자 유의사항 .....	7
4. 주요내용 요약서 .....	8
5. 보험용어 해설.....	10
6. 무배당 KB스타즉시연금보험보통보험 약관 .....	13
7. 특별조건부특약 특별보험 약관 .....	47
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 .....	5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신 고객님에게 동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KB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해 주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률 보다 더욱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활용에 동의해주신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질병정보입니다.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활용(이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 및 연락처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 사유 등 지급내용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용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KB생명이 직접 또는 국내의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KB생명과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자(계약적부·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콜센터업무수탁회사, 리서치업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보험사고의 조사, 보험계약의 상담,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가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하여 고객님의께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1. 목적 범위외의 제공·활용 중단 요청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하거나 동의서에 명시된 제공받는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활용의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

기 동의한 신용정보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KB생명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부터 전화, 이메일 등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화수신거부

KB생명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부터 마케팅전화를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KB생명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고객님의께서는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5.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요구 권리

KB생명이 신용정보조회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및 제공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6.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KB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전화(1588-9922)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bli.co.kr](http://www.kbli.co.kr))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취급방침 안내

KB금융그룹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및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 금융거래정보” 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 증권총액정보등” 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KB금융그룹은 2008.9.29.부터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회사등간에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만족스러

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이용 또한 엄격하게 관리·감독됩니다.

###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 ②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의 총액 및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④ 기타 법령에 정하는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의 개인신용정보

### 2. 고객정보의 제공처

KB 금융그룹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 금융지주,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보험, KB 자산운용,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저축은행입니다.

###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 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영업상 목적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 ② 지주회사 및 각 자회사등의 임원 1 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얻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자회사등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보고 등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감독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 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각 자회사등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고객의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⑧ 위법·부당한 고객정보 취급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결과통지 등 민원처리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각 자회사등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 2. 1.

### KB 금융 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 가입자 유의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 및 연금액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책임준비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2)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청약 철회

-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 보험용어 해설

###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7.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11.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2. 예정이율**

보험은 보통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접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래에 납입할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하기 위하여 미리 산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시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반대로 보험료가 싸지게 된다.

**13.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4.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15.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경영 방침 및 구체적 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16.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 17.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보험회사에서 하는 계약 소멸행위나 보험계약자가 하는 계약 소멸행위가 해지이다.

**무배당 KB스타즉시연금보험  
보 통 보 험 약 관**

**목 차**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16
제2조 【청약의 철회】 .....	16
제3조 【계약의 체결, 보험료 및 연금지급형태】 .....	17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18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9
제6조 【계약의 무효】 .....	20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21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21
제9조 【계약의 소멸】 .....	22
제10조 【보험나이】 .....	22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23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3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24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4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25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26
제17조 【해지환급금】 .....	28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	28
제19조 【소멸시효】 .....	28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 의무】 .....	29
제21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29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31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	31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통지】 .....	32
제25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32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	32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32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32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33
제3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34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	35
제32조 【보험계약대출】 .....	35
제33조 【중도인출】 .....	35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	36
제35조 【관할법원】 .....	36

제36조 【약관의 해석】 .....	37
제3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37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37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7
제40조 【준거법】 .....	38
제4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38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39
【별표2】 재해분류표 .....	44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	45



## 무배당 KB스타즉시연금보험

##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종(즉시형)의 경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보장개시일부터 만기보험금지급일까지를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하고, 2종(거치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부터 종신까지를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 예정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계약의 체결, 보험료 및 연금지급형태)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연금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2종(거치형)에 한함]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1)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일시납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2)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1) 지표금리수익율의 산출에 사용된 국고채수익률이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 + 0.5%』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1)에서 정한 납입한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 2) 지표금리수익율의 산출에 사용된 국고채수익률이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1)에서 정한 납입한도의 0%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종(즉시형)의 경우에는 가입시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종신연금형
    - 개인형[정액형, 5%체증형(10년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100세 보증
    - 개인형[조기집중형]: 20년 보증
    - 부부형[정액형, 5%체증형(10년체증)]: 20년 보증
  2. 상속연금형
    - 종신형
    - 만기형(10년, 15년, 20년, 30년)
 단, 만기형은 1종(즉시형)에 한함

####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

으로 제 1 항 제 2 호에 정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보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가입금액(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상속연금형에 한하여 변경가능합니다.)
  - 2. 계약자
  -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2종(거치형)에 한함)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으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에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2종(거치형)에 한함)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종신연금이 지급개시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

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종신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제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을 지급
- 3. 상속연금형중 만기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종(즉시형)의 경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상속연금형에 한함)

(2) 2종(거치형)의 경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함)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아래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종(즉시형)의 경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상속연금형에 한함)

(2) 2종(거치형)의 경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함)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55:4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고, 12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1.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0.55 + 지표금리수익률 × 0.45

2.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2/6)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2/6)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3. 지표금리수익률은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기준으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 지표금리수익률(%) =  $(A1 + A2 + A3) / 3$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frac{Mi(-3) \times 1 + Mi(-2) \times 2 + Mi(-1) \times 3}{6}$$

단, Mi(-3)은 직전3개월, Mi(-2)은 직전2개월, Mi(-1)은 직전1개월 이율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주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주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④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10년미만은 연복리 2.5%, 경과기간 10년 이상은 연복리 1.5%를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가입후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2.5%)로 부리되며,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 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 651 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제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3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2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중도인출(2종(거치형에 한함))**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80%범위 이내에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일시납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책임준비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제6관 분쟁조정 등

###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3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4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1종(즉시형)

(1)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신연금 10형	개인형	[정액형, 체증형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보증)
		[조기집중형]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동안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지급 (20년보증)
	부부형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20년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 기간(2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지급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상속연금형	상속연금	종신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
		만기형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 (10년, 15년, 20년, 30년)

(2) 사망보험금(상속연금형에 한함)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5%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3) 만기보험금(상속연금형의 만기형만 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일시납 보험료

## 2. 2종(거치형)

### (1)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 신 연 금 형	개 인 형	[정액형, 체증형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보증)
		[조기집중 형]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 비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동안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 액의 2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지 급 (20년보증)
	부 부 형	주피 보험자 (주된 보험대상 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20년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종피 보험자 (확장 보험대상 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 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 부터 보증지급 기간(2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 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 해당 액의 50% 지급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상 속 연 금 형	상 속 연 금	종신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 (2) 사망보험금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 1. 주) 연금지급방법

종 류	연금지급	연금지급시기
1종(즉시형)	월단위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지급
2종(거치형)	월단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2.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5%체증형은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종신연금액에 5%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종신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개인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또는 100세)중의 미지급된 종신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의 종신연금 경우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월액(12회분)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8.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후 경과기간 10년미만은 연복리 2.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합니다.
9.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종(즉시형)의 경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보장개시일부터 만기보험금지급일까지를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하고, 2종(거치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10. 2종(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종신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신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별표2]

재 해 분 류 표**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 안은 제6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9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사망보험금(제1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제13조 제2 호)	회사가 종신연금 및 상속연金的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종신연금 및 상속연金の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제13조 제3 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1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표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과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특별조건부특약  
특별보험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48

제2조 【특약의 내용】 ..... 48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 48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50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 50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50

  

【별표1】 재해분류표 ..... 51



## 특별조건부특약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특약에서 “ 보험계약” 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 주된 보험계약” 은 “ 주계약” 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 : 주계약 [별표2] 참조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대상】 ..... 53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53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53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54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54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54

제4관 기타사항

제7조 【준용규정】 ..... 55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4관 기타사항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